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5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김선민 · 신장식 · 정춘생
서왕진 · 이해민 · 전진숙
강경숙 · 차규근 · 김 윤
서영석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

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9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u><신 설></u>	9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

10. ~ 19. (생 략) ④ · ⑤ (생 략)	<u>의 심사 · 결정에 필요한 진료</u> <u>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u> 10. ~ 1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